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0월 1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0월 19일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김 은 영

나. 동의사항

○ 2023년도분 지방채 발행 ⇨ 54,500백만원

-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 50,000백만원
-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 1,500백만원
- 오태공원 조성사업 : 3,000백만원

다. 제안이유

○ 도시건설국

1) 도시재생과

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2023) : 50,000백만원

- (1)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사업으로,
- (2) 1산단(공단동 249번지 일원)에 산업·문화 등이 융합된 산업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창업오피스·복지시설·행복주택 등의 지원시설 확보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함.

- (3) 현재 건축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지구 내 시설 위치 이동에 따른 시설면적 증가로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2023년 투입될 실질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2023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2023) : 1,500백만원

- (1) 국토교통부 ‘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상 국고지원액(중심시가지형, 150억원)에 비례한 주택도시 보증기금을 10%이상 활용토록 의무화 됨.
- (2) 이에 따라 「금오시장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환경교통국

1) 공원녹지과

가) 오태공원 조성사업(2023) : 3,000백만원

-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태공원은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주민 이용도와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과 연계한 공원개발의 가치가 높아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20.6월)를 득했음.
- (2)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토지 보상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그 계획이 취소됨.
- (3) 이에 따라 기한 내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오태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라. 발행개요

○ 2023년 지방채 발행

• 세부내역

(단위:억원)

부서명	사 업 명	신청액	비고
계	2개 부서, 신청 3건	545	
도시재생과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500	기발행 130억원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5	
공원녹지과	오태공원 조성사업	30	기발행 20억원

마. 주요내용

○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1) 지방채 발행계획

가) 발 행 액 : 50,000,000,000원(금오백억원)

나) 차 입 선 : 주택도시보증공사

다) 연 리 : 1.8%

라) 상환기간 : 최장13년(만기일시상환) ※ 필요 시 최장 35년까지 지원

마) 상환재원 : 시비

바) 발행방법 : 캐피탈 콜* (Capital call)

* 캐피탈 콜(Capital call) : 융자금 전체를 미리 설정한 뒤 투자가 필요할 때마다 약정된 계약에 따라
투자금액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방식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5년간)

나) 위 치 :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다) 총사업비 : 1,912억원 ※ 뉴딜사업비 417(국250, 도42, 시125), LH 342, 기금(융자) 1,153

라) 사업규모 : 18,280㎡(4개동, 지하2층 ~ 지상18층)

마) 공 정 율 : 20%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위치도 및 조감도(안)>

위치도



조감도



○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 지방채 발행계획

가) 발 행 액 : 1,500,000,000원(금일십오억원)

나) 차 입 선 : 주택도시보증공사

다) 연 리 : 1.5%

라) 상환기간 : 최장17년(만기 일시상환)

마) 상환재원 : 시비

바) 발행방법 : 증서차입채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 2024년 / 3년간

나) 위 치 : 구미시 원평동 1033-7번지(대지면적 931.3㎡)

다) 총사업비 : 85.2억원(국 47.34 도 7.89 시 14.97 기금 15)

라) 공 정 율 : 5%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구상도>



○ 오태공원 조성사업

1) 지방채 발행계획

가) 발 행 액 : 3,000,000,000원(금삼십억원)

나) 차 입 선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다) 연 리 : 2%

라)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마) 상환재원 : 시비

바) 발행방법 : 증서차입채

2)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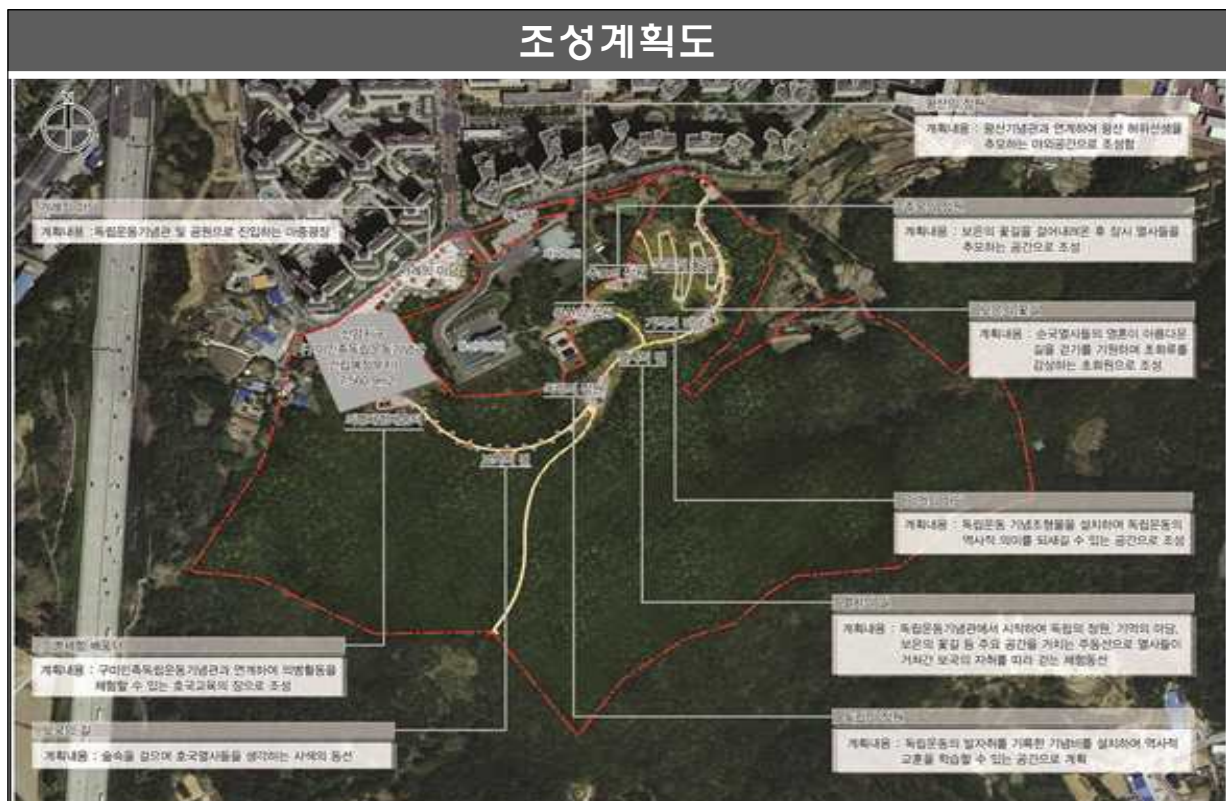
가) 사업기간 : 2020 ~ 2026년 / 7년간

나) 위 치 : 구미시 임은동 산9-1번지 일원

다) 총사업비 : 9,600백만원(보상 7,000 공사 2,500 설계 100)

라) 공 정 율 : 토지보상(1차) 진행 중 - 6필지 12,305m²

<오태공원 조성계획도>



바.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3. 검토의견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동의안은

-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마련과 대규모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도 3개 사업 54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액은 545억 원으로 이번 발행 규모는 행정안전부의 발행 한도액(2023년도 672억) 범위 내에 있음.
- 지방채 발행에 따라 2022년 말 구미시 지방채 총 규모는 2,005억원으로 2021년말(2,065억원)보다 60억원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2,396억원 [2,005억원(2022년말) + 545억원(2023년도 발행분) - 154억원(상환 예정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참고로,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500억 원은 일시로 모두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500억 원을 한도로 정해놓고 필요한 예산만큼 투자금액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형식(캐피탈 콜)임.

- 금회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모두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주민 수혜도가 높고 시급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시의 채무부담도가 비교적 높아 사업의 필요성,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